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성재, 김영래, 백철현, 김명석, 배명호, 이수경, 이화숙 의원
공동발의

2. 제정이유

○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, 지역건설산업체 보호를 위한 권장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,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규정(안 제3조~4조)

다.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력 (안 제4조 2항)

라.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 및 개선대책 강구(안 제5조)

마.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,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사용토록 권장 (안 제6조)

마.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토록 함(안 제7조)

바.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, 예우 등, 적용배제 규정을 정함 (안 제9조~11조)

사.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위촉,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2조~제14조)

아.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,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정함 (안 제15조~17조)

자.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애로접수창구 개설, 운영 규정을 정함 (안 제18조)

4.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 제정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, 건설신기술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하고,

○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및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

○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,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확대,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